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39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6. 10. 31.
- 라. 회부일자 : 2016. 11. 3.

II.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7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각종학교 1개교, 유치원 7개원을 각각 신설하며, 각종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 명칭변경(안 별표1부터 별표7)
 - 강서교육지원청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성북교육지원청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나. 초등학교 : 신설 2개교
 - 신설(안 별표1)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금나래초등학교(금천구 독산동 441-28)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솔초등학교(강동구 강일동 414-2)
- 다. 고등학교 : 신설 2개교
 - 신설(안 별표3)
 - 도선고등학교(성동구 하왕십리동 533)
 - 금호고등학교(성동구 금호1가동 339)
- 라. 각종학교 : 명칭변경 1개교, 신설 1개교(안 별표6)
 - 명칭변경
 - 서울다솜학교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 신설
 -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 마. 유치원 : 신설 7개원
 - 신설(안 별표7)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금나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금천구 독산동 441-28)

- 북부교육지원청 - 서울상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노원구 상계로9길 39)
- 중부교육지원청 - 서울광희초등학교병설유치원(중구 다산로 269)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강술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강일동 414-2)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강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양천구 신월로 97)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서울중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광진구 긴고랑로13길 59)
- 서울경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성동구 뚝섬로 332)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4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별표 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16. 9. 21.~10.10)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가칭)왕십리고등학교 및 가칭)금호고등학교의 결정 교명인 왕십리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각각 도선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로 변경결정하여 2016. 10. 14. ~ 10.18. 재입법예고하였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39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변경 3건과 초등학교 2개교 및 고등학교 2개교 신설, 각종학교 명칭변경 1건과 신설 1건 및 유치원 7개원 신설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로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 제출된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명칭변경의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

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종학교인 다솜학교의 명칭을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11개의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¹⁾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지원청은 2~3개의 자치구를 하나로 묶어 설치함에 따라 행정동명을 지원청 명칭에 모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해당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11415).
- 이에 따라 2013년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2014.6.11.), 11개 교육지원청 중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명칭 변경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서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이 명칭변경을 요청하였는 바,
 지난 2016년 8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강서교육지원청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 강남교육지원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성북교육지원청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동 명칭변경의 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단순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서울시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현황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 중랑	중부교육지원청	종로, 중구, 용산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 마포, 은평	강남교육지원청	강남, 서초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교육지원청	강서, 양천
북부교육지원청	도봉, 노원	성북교육지원청	성북, 강북

- 다음으로 종로구에 위치한 다솜학교의 학교명 변경의 건은 각종학교인 다솜학교의 명칭을 다솜관광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솜학교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공립 대안학교로서 현재 컴퓨터미디어과와 호텔관광과 등 2개 전공으로 6개 학급 10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 동 조례상의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²⁾과 제2조³⁾ 각호에 따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별표 2의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른 7종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동법 제60조제2항 단서에서 학력인정 학교인 대안학교는 학교명에 동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공립 대안학교⁴⁾인 다솜학교를 다솜관광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별
 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다솜학교 현황

(단위 : 학급)

학과명	2016				2017				2018				2019				증감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컴퓨터미디어과	1	1	1	3	0	1	1	2	0	0	1	1	-	-	-	-	△3	폐지
관광콘텐츠과	-	-	-	-	1	-	-	1	1	1	-	2	1	1	1	3	3	신설
호텔관광과	1	1	1	3	-	1	1	2	0	0	1	1	-	-	-	-	△3	폐지
관광서비스과	-	-	-	-	1	-	-	1	1	1	-	2	1	1	1	3	3	신설
계	2	2	2	6	2	2	2	6	2	2	2	6	2	2	2	6	0	

나. 학교신설에 대한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학교신설의 건은 2017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각종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7개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동 건의 학교신설에 포함된 총12건의 학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이미 서울시의회
 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었
 는바, 2017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들을 사전에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신설되는 학교 중 강솔초는 ‘가칭)미사리초’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교
 명제정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⁵⁾ ‘강산초’로 결정되었으나⁶⁾,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
 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
 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명에 대해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 위원회에서는 ‘강산’의 사전적 뜻이 ‘나라’, ‘천하’를 뜻하여 초등학교 이름으로는 그 의미가 너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보통명사인 ‘강산’을 고유명사인 학교명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강솔초’로 결정되었고, ‘강솔초’로 입법예고를 한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가칭)금호고’와 ‘가칭)왕십리고’의 교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자치구의 교명변경 의견이 제출되었고7), 이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교명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가칭)왕십리고’를 ‘도선고’로 최종적 결정하였는바, 학교명에 대해 절차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학교명 심의 결과

학교급	소관 기관	가칭 학교명	검토 명칭	교명제정 자문위원회	교명제정 심의위원회	교명제정 심의위원회 재심의
초	강동 송파	미사리초	강산, 강솔, 강여울, 강빛, 강선	강산	강솔초	
	남부	구심초	금나래, 금하, 금빛	금나래	금나래초	
고	본청	금호고	금호, 독서당, 백범, 용비	-	금호고	금호고
	본청	왕십리고	도선, 청계	-	왕십리고	도선고

- 다만 강솔초 및 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 신설에 따른 준공일이 강솔초의 경우 개교예정일인 2017년 3월 1일 이후인 2017년 3월 29일이며, 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7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학교 개교 이후에도 증축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4] 학교신설 심의 결과

연번	학교급	소관 기관	명칭	위치	공유재산관리계획		비고
					심사일	결과	
1	초	강동 송파	강솔초	강동구 강일동	2014.12.4	가결	
2		남부	금나래초	금천구 독산동	2014.12.4	가결	
3	고	본청	금호고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4.12.4	가결	

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함

- 6) 지역소재 학교들이 ‘강’자 돌림을 쓰고 있어, 일체감을 고려해 ‘강’자가 들어간 교명을 논의하였고, 지역주민 투표에서 1순위로 선택된 ‘강빛초’는 거센소리로 발음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자문위원회 투표결과 강산초가 1순위, 강솔초가 2순위로 결정됨.(2016년 제1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명제정자문위원회, 2016.8.9.)
- 7) “왕십리에 있다고 왕십리고로 이름을 짓는 것은 애들 이름을 말자, 순자로 짓는 것과 같음. 도선고나 송신고로 변경 요청”국민신문고(2016.9.26.), 주민의견 접수 및 투표, 명문고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칭)왕십리고를 도선고로 변경 요청(성동구청 교육지원과-9682,2016.10.10.)

연번	학교급	소관기관	명칭	위치	공유재산관리계획		비고
					심사일	결과	
4		본청	도선고	성동구 금호1가동	2012.11.23	가결	
5	각종	본청	금천문화예술 정보학교	금천구 남부순환로	-	-	한울중학교 이적지 내부 리모델링으로 심사대상 아님
6	유치원	남부	금나래초 병설유치원	금천구 독산동	2014.12.4	-	금나래초와 동시 추진 5억미만으로 심의대상 아님
7		북부	상계초 병설유치원	노원구 상계호9길	-	-	5억미만으로 심의대상 아님
8		중부	광희초 병설유치원	중구 다산로	-	-	내부리모델링으로 심의대상 아님
9		강동 송파	강술초 병설유치원	강동구 강일동	2014.12.4	가결	강술초와 동시 추진
10		강서 양천	강월초 병설유치원	양천구 신월로	-	-	내부리모델링으로 심의대상 아님
11		성동 광진	중광초 병설유치원	광진구 긴고랑로13길	-	-	
12		성동 광진	경일초 병설유치원	성동구 뚝섬로	-	-	

[표-5] 학교신설 추진 공정률

(기준 : 2016.12.12.)

연번	학교급	소관기관	명칭	공사착공일	준공예정일	개교예정일	공정률 (12.12.현재)
1	초	강동 송파	강술초	2016.01.05.	2017.03.29.	2017.03.01.	69%
2		남부	금나래초	2016.01.11.	2017.03.05.	2017.03.01.	80%
3	고	본청	금호고	2015.12.31.	2017.04.30.	2017.03.01.	66%
4		본청	도선고	2015.09.21.	2017.03.08.	2017.03.01.	67%
5	각종	본청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2016.11.18	2017.03.17.	2017.03.01.	5%
6	유치원	남부	금나래초병설유치원	2016.01.11.	2017.03.05.	2017.03.01.	80%
7		북부	상계초병설유치원	2016.10.19.	2017.01.16.	2017.03.01.	35%
8		중부	광희초병설유치원	2016.08.01.	2016.11.28.	2017.03.01.	100%
9		강동 송파	강술초병설유치원	2016.01.05.	2017.05.30.	2017.05.(예정)	20%
10		강서 양천	강월초병설유치원	2016.07.22.	2016.11.03.	2017.03.01.	100%
11		성동 광진	중광초병설유치원	2017.01.(예정)	2017.02.(예정)	2017.03.(예정)	0%
12		성동 광진	경일초병설유치원	2017.01.(예정)	2017.02.(예정)	2017.03.(예정)	0%

- ※ 1. 금천문화예술정보교 : 설계용역 완료, 내부리모델링 공사로 2017.3월 준공완료 예정
- 2. 중광초병유, 경일초병유 : 2016.제3회 추경에 예산 반영, 설계용역 완료, 내부리모델링 공사로 2017.2월 준공완료 예정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8.2.] [대통령령 제27421호, 2016.8.2., 일부개정]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별표 2의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6.7.7.] [서울특별시조례 제6259호, 2016.7.7., 전부개정]

제7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영 제9조제10호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억 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포함한다.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
 - 나. 시 지역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
 - 다. 군 지역에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
5.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